

이동식크레인(차량탑재형) 탑승설비 부착 금지



중대재해 발생현황

이동식크레인(차량탑재형)의 최근 6년간 총 재해건수는 44건(사망 49명, 부상 8명)

그 중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재해 건수는 총 18건(사망 23명, 부상 6명)으로 약 41% 차지

2016. 12.
사망 3명
부상 1명



2015. 7.
사망 2명



2013. 7.
사망 2명



관련법령

〈자동차관리법〉

제34조(자동차의 튜닝)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※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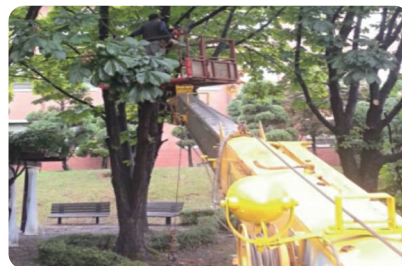
제86조(탑승의 제한)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. ※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 사례

신호등 설치·해체 작업



수목 전지 작업



간판 설치·해체 작업

